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213
------------------	-----

제출년월일 : 2006. 4. 20

제출자 : 최광렬의원외 6인

1. 제안이유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에 대하여 지급하던 실비변상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지급 기준 개정(안 제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신설됨에 따라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하여 지급하던 실비변상 금액을 회기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3. 참고사항

-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회기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일비등의 안건심의 수당”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일비 등)</p> <p>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회기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일비 등의 안건심의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조(일비 등)</p> <p>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